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

내 용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지침(환경부)」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에서 배제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시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가 5,000두 미만 또는 사육면적 5,000㎡ 미만인 관할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·반입·처리하되,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(축산농가)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·반입·처리하도록 되어 있다.

다만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,000두 이상 또는 사육면적 5,000㎡ 이상의 돼지사육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,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시 톤당 처리비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수준으로 처리비용을 높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수거·반입·처리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개별처리시설을 설치한 돼지 사육두수

5천두 이상 또는 사육면적 5,000㎡ 이상의 대규모 농장은 배제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지역 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·처리하여야 한다.

천안시는 ○○읍 ○○리 00-0번지 ○○하수종말처리장 내에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(120㎥/일)’¹⁾을 설치하여 2010년 4월부터 운영·관리되고 있다.

2006. 4. 27. 천안시 ○○구 ○면 ○○로 0-00(○면 ○○리 00-0번지) 일원에 가축분뇨배출시설 ‘○○○○농장(대표자 : ○○○)’의 설치허가를 받아, 2009. 12. 21.부터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’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, 2016. 11. 9. 배출시설 568.0㎡를 증축하면서 사육면적이 5,224.62㎡(당초 4656.62㎡)로 되었다.

천안시 ○○과는 ○○○○농장²⁾의 사육면적이 5,000㎡ 이상의 대규모 농장에 포함되면서 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지침(환경부)」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’로 수거·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을 중단하거나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실제 소요되는 톤당 처리비용 수준으로 처리비용을 높게 받아야 한다.

1)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: 시설용량(120㎥/일 : 정화 90㎥/일, 액비화 30㎥/일), 처리공법(정화+액비화), 사업기간(2008.3~2010.2), 사업비(14,250백만원), 시공사(○○건설 외 5개사)

2) 축산농가(○○○○농장)*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지원현황

구 분		보조사업 지원내역 (천원)	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	융자	자부담	
○○○○ 농장	2007년(발효기)	150,000	45,000	9,000	21,000	75,000	-	
	2012년(액비조)	187,000	25,500	12,750	29,750	-	119,000	
합 계		337,000	70,500	21,750	50,750	75,000	119,000	

* 돼지 사육면적 5,000㎡ 이상의 허가규모 축산농가(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)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‘○○○○농장’의 가축분뇨를 아래 [표1]과 같이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’에 수거·반입하여 처리하였다.

[표1] 공공처리 비대상 대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현황

구분	총 반입량(톤)			
	2015년	2016년	2017년	합 계
○○○○농장	-	204	1,409	1,613

※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

한편, 천안시 ○○과는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’의 가축분뇨 실제 처리비용이 2016년 기준 30,799원/톤³⁾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「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지 않아 아래 [표2]와 같이 실제 처리비용의 6.5%에 불과한 2,000원/톤⁴⁾의 수수료만 징수하였다.

[표2] 가축분뇨 처리비용 현황

구 분	가축분뇨 처리비용		
	실제 소요비용(A)	천안시 부과금액(B)	비용차(C=A-B)
○○○○농장	1,613톤 × 30,799원/톤 = 49,678,787원	1,613톤 × 2,000원/톤 = 3,226,000원	46,452,787원

※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

결국 천안시 ○○과는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○○○○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‘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’로 수거·반입하도록 하였고, 5,000㎡ 이상의 대규모 농장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징수 근거인 「천안시 가축

3)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'16년 연간 총 운영비 ÷ '16년 총 반입량 = 904백만원 ÷ 29,352톤 = 30,799원/톤
 4) 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지침」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거·반입·처리 대상 폐지 축산농가의 허가규모는 사육두수 5천두 미만 또는 사육면적 5,000㎡ 미만이며, 「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[별표2] 허가대상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2,000원/톤.

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○○
○○농장에 최근 2년간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약46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
한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

[시정]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「천안시
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대규모 축산
농가의 가축분뇨 반입 시 실제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
바라며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
바랍니다.